

의안번호	제142호
의결 연월일	2019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서동학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2월 26일

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서동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19년 2월 26일

발의자: 서동학, 이숙애, 김영주
박성원, 이의영, 임기중
황규철의원

1. 제안이유

충북도내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 및 한국 문화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,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수행과 학교생활 적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다문화예비학교의 지정·운영을 규정함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붙임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과학국제문화과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-8호

2019. 1. 29. ~ 2019. 2. 18.(특이의견 없음)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, 제13조, 제14조를 각각 제13조, 제14조, 제15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다문화예비학교 지정·운영)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다문화 예비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2조(다문화예비학교 지정·운영)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교육감은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다문화 예비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제12조(생 략)</u></p>	<p><u>제13조(현행 제12조와 같음)</u></p>
<p><u>제13조(생 략)</u></p>	<p><u>제14조(현행 제13조와 같음)</u></p>
<p><u>제14조(생 략)</u></p>	<p><u>제15조(현행 제14조와 같음)</u></p>

관 계 법 령

□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22.>

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 <신설 2012.2.1., 2015.12.1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2.2.1.>

제6조(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(아동·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 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)를 제공하고,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·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4., 2016.3.2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 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,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4.4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

득수준,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2.1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, 금융정보 등의 제공, 조사·질문 등은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신설 2015.12.1.>

⑤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12.1.>

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4.4., 2015.12.1.>

제10조(아동·청소년 보육·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 보육·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5.12.1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1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,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2., 2015.12.1.>

④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·청소년 보육·교육을 실시함에 있어

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12.1.>

[제목개정 2015.12.1.]

□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

제12조(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, 대한민국의 제도·문화에 대한 교육,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,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7.23.>

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.

제18조(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·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, 홍보,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2019년 다문화예비학교 추가 지정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반영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다문화예비학교 추가 지정(초, 중 총2교)에 따른 운영비

3. 관련조문

- 「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」 제12조

제12조(다문화예비학교 지정·운영)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② 교육감은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.
 ③ 제1항에 따른 다문화 예비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: 다문화예비학교 추가 지정에 따른 운영비 증액

나. 추계 결과

(단위: 천원)

연간 운영비 추계		연도별 운영비 추계				
산출기초	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합계
1. 다문화예비학교	220,000	220,000	360,000	440,000	520,000	1,540,000
가. 기존교 운영비 28,000,000원× 5교=	140,000	140,000	280,000	360,000	440,000	1,220,000
나. 신규교 운영비 40,000,000원×2교=	8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	400,000

※ 2018년 이후 매년 초·중1교 추가지정에 따른 운영비 추계 반영

다. 재원조달방안: 기존교 특별교부금 및 기존교·신규교 보통교
부금자체재원 추가 지원으로 충당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과학국제문화과 국제교육담당 장학관 오영록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계	
세 입	220,000	360,000	440,000	520,000	1,540,000	
보통교부금	80,000	164,000	188,000	212,000	644,000	
특별교부금	140,000	196,000	252,000	308,000	896,000	
세 출	220,000	360,000	440,000	520,000	1,540,000	
기존교 운영비	140,000	280,000	360,000	440,000	1,220,000	
신규교 운영비	80,000	80,000	80,000	80,000	320,000	
재원 조달	220,000	360,000	440,000	520,000	1,540,000	
의존 재원	소 계	220,000	360,000	440,000	520,000	1,540,000
	국고보조금					
	보통교부금	80,000	164,000	188,000	212,000	644,000
	특별교부금	140,000	196,000	252,000	308,000	896,000
자체 수입	소 계					0
	자체수입					0
지방채					0	
기 금					0	
기타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0	